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발·시공]

하도급법

2025. 9.



일진전기

< 목 차 >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관	5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5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5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 요소.....	5
II.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내용 및 실적	8
3. 당사 CP 조직도.....	8
4. 당사 주요 CP 제도(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CP운영규정을 참고).....	8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9
5.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수행 역할.....	9
6.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구성.....	11
7.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2
8.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12
PART 2 하도급법 해설	13
I. 하도급법 개관	13
1. 적용 대상 거래.....	13
2. 주요 개념.....	13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5
1.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15
2. 하도급대금 관련 유의사항.....	27
3.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40
4. 기타 유의사항.....	51
III. 위반 시 제재	51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51
2. 공공입찰 참가 제한.....	52
3.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52
4. 과징금.....	52
5. 형사처벌.....	52
6. 손해배상.....	53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54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54
2. 서면의 보존.....	54
3.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	55
4. 단가 협의 및 결정.....	55
5. 하도급대금 감액.....	57
6. 하도급대금 지급.....	58
7. 발주 취소/반품/수령 거부.....	58
8.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	59

9. 경영간섭.....	60
PART 3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연혁.....	61
부록 1.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62
부록 2. CP 운영규정: 별첨	62

발간사

존경하는 일진전기 임직원 여러분,

2025년 7월, 우리 회사는 준법 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CP의 운영방향과 공정거래 법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CP의 핵심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설 및 사례, 위반시 제재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일진전기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1)구매 2)영업 3)개발·시공 4)경영지원·총무·마케팅등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총 4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부서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법규 및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았습니다.

본 편람이 업무 지침서로서 임직원들에게 폭넓게 활용되길 바라며, 변화하는 환경과 법규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진전기의 대표이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C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리 일진전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이사 황 수



대표이사 유상석



2025 자율준수편람(개요)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관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구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자 행동규범에 해당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CP를 도입 및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CP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 요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이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자율준수관리자 지정(임명)
 -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에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

 - 지속적·체계적 자율준수 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시
 - CP 기준 절차, 공정거래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구매·영업 부서 등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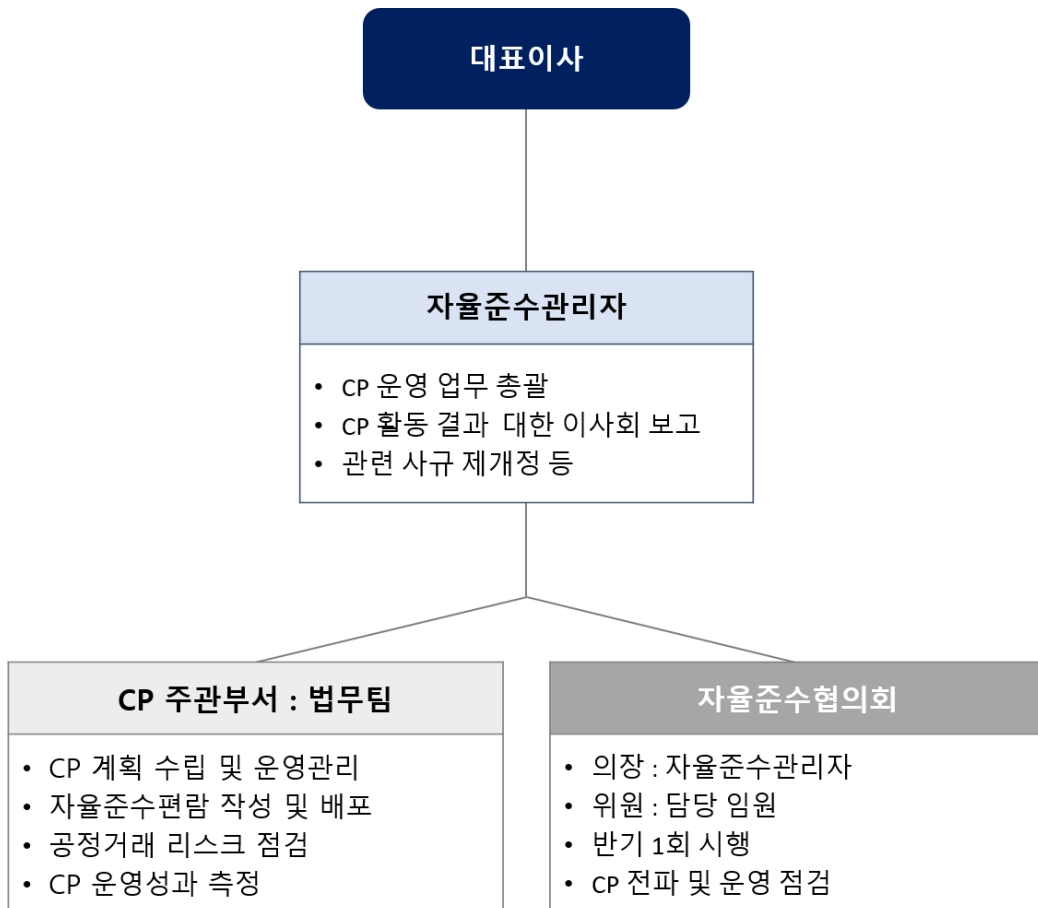
-
- 내부감시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CP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감시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II.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 내용 및 실적

1. 당사 CP 조직도



2. 당사 주요 CP 제도(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CP운영규정을 참고)

- 사전업무협의제도:**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부서에 대하여 그 수행 업무에 대한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해야 함
-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각 부문의 임원을 위원으로 하여, CP 운영 상황의 자율점검 및 각 부문 내 전파 등 CP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함

-
- **자율분쟁조정기구:** 자율준수협의회는 회사와 협력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여 협력업체와 조정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종결함
 - **위험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성 경감조치를 수립·시행함
 - **효과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CP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회사 내의 공정거래법규 위반 행위를 감사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함
 - **내부고발시스템:** 회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포함한 제반 법규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고발시스템을 운영하며, 조사의 독립성·중립성·객관성·익명성을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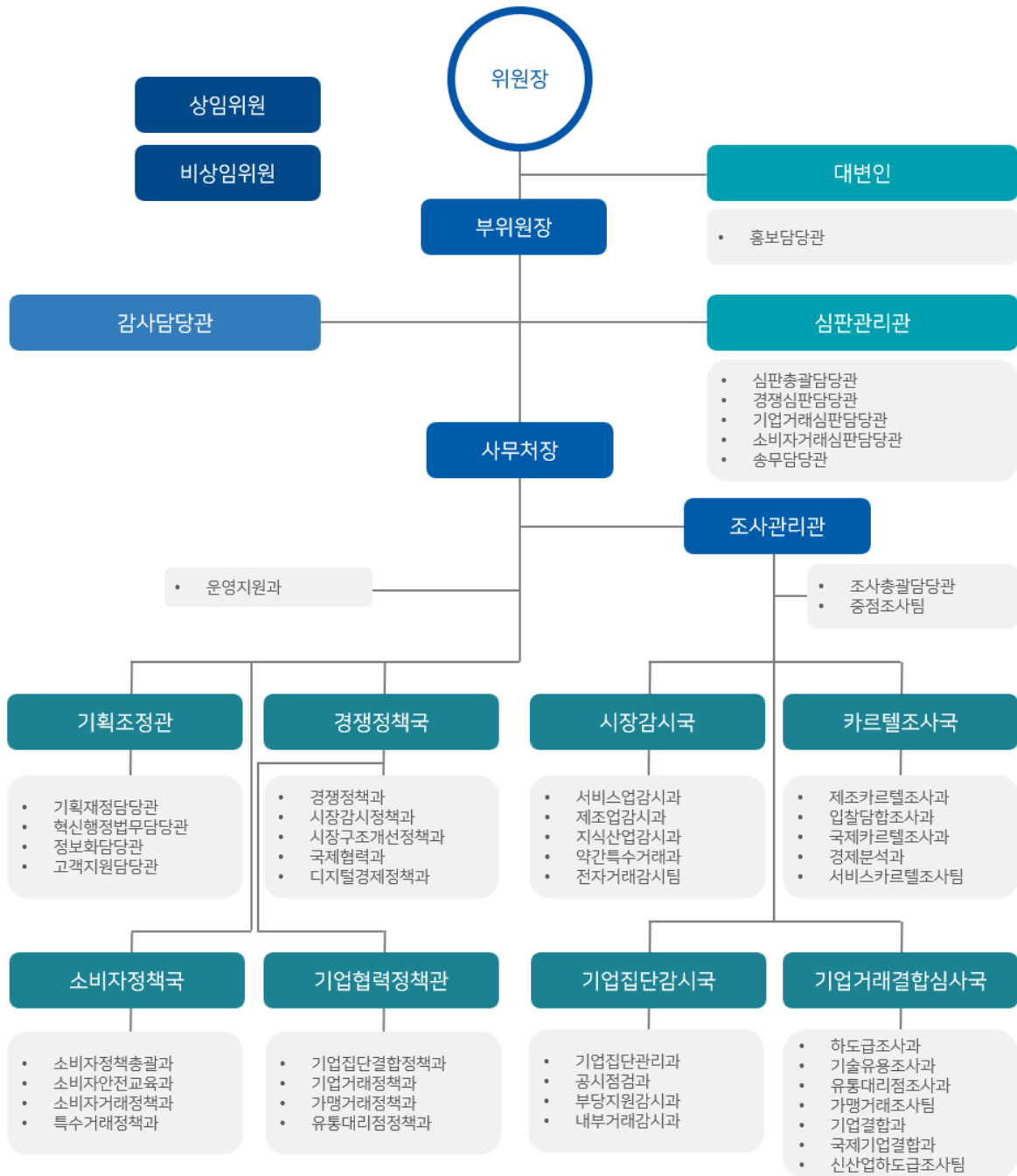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수행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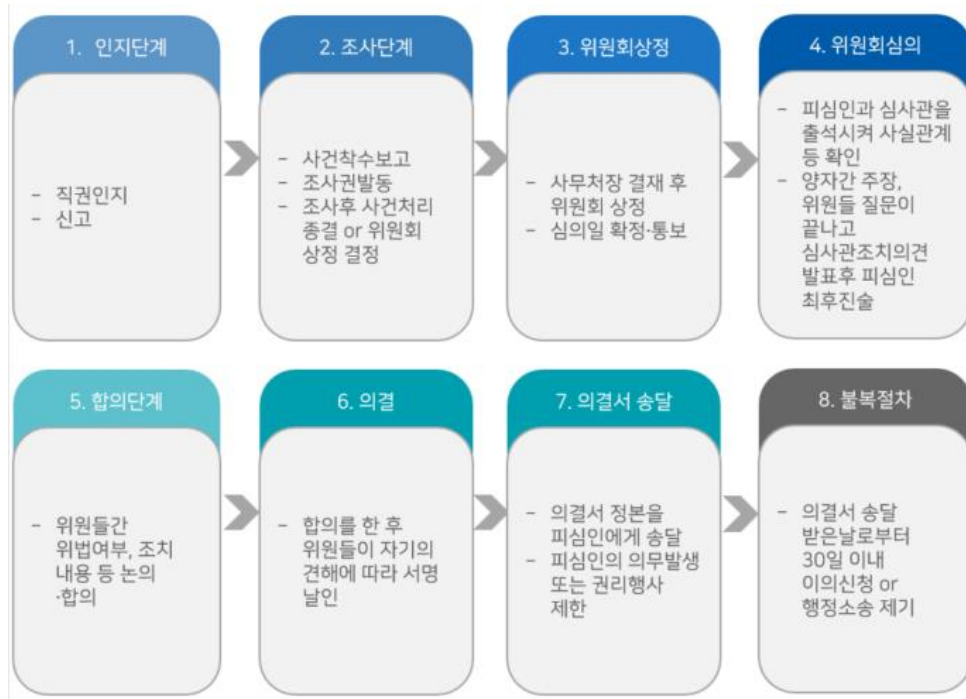
- **공정한 경쟁 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
 -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구성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4. 당사의 사업과 관련도가 높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법률명	기본 개념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PART 2 하도급법 해설

I. 하도급법 개관

1. 적용 대상 거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받은 부분은 제조·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에 납품하는 거래(하도급거래)

2. 주요 개념

가.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 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 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

나.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
-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의 경우에만 수급사업자에 해당

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의 종류	
제조위탁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

	<p>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 사무 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주택법」 제

	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용역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II. 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1) 원칙

-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완료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

법정기재사항
① 위탁일과 위탁목적물의 내용
② 목적물 납품·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포함)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방법·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비교 시점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만약 긴급한 사정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에 법정기재사항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서면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작업 개시 '전에'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위탁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작업을 개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 작업을 개시하고, 그 직후 신속하게 거래조건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단, 실무상 공정위가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긴급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수급사업자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거래금액 대비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사소한 거래의 경우에도 모두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거래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든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위탁

전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Q3.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도급계약서상 최초 기간이 종료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제재 사례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공정위 의결 제2023-08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중공업(주)는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서면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1) 원칙

- 하도급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함(단, 기술자료 관련 거래 자료는 7년)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함(전자 문서도 동일)

순번	보존 대상 서면	보존기간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3년
2	목적물 수령증명서	3년
3	목적물 검사결과 통지서(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	3년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이 기재된 서류(어음결제 시 어음교부일, 금액, 만기일 포함)	3년
5	선급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및 그 지연이자 지급 시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3년
6	수급사업자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가 기재된 서류	3년
7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관련 서면	3년
8	기술자료제공요구서	7년
9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서	7년

10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11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3년
12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 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 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3년

(2) 제재 사례

(주)동희의 하도급계약서 미보존 행위 (공정위 의결 제2015-087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기본계약서를 작성·발급하였으나, 거래를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음(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던 중 유실)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위 기본계약서 등과 같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서류 미보존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하도급법 제3조의4)

(1) 원칙

-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
- “계약조건”은 “하도급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하도급법령에 의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 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한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나 그로 인한 비용 전가 가능성과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관계없이, 그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나요?

전염병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거래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특약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양사간 충분히 협의하여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재 사례

파인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부당특약 설정행위 (공정위 의결 제2023-00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인건설(주)는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현장설명서 및 공제 확약서에 ① 환경관리 비용(폐기물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②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특약 ①의 경우 품질관리 또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특약 ②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각각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라.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원칙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②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③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배제됨

하도급대금 연동이 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③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단발성 거래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적 계약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u>단발성 거래</u> 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Q2. MRO 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인가요?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u>단순 구매행위</u> 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

로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2. 하도급대금 관련 유의사항

가. 단가 협의 및 결정(하도급법 제4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부당하게'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위탁 시점에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단가를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단가를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 시점에 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단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물량을 바탕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물량확정이 가능한 시점에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예상물량과 실제 위탁물량 간 차이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Q2. 최저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입찰 실시나 단가 재협상이 금지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추가적인 단가협상을 시도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공정위 의결 제2009-081호).

단, 최저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 ①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 고지할 것
- ② 예정가격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자료를 기록, 보관할 것
- ③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후적으로 원사업자 예정가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 및 그 산정 근거를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것

(3) 제재 사례

특정 품목의 단가인하 대가로 다른 품목에서의 단가인상을 약속한 뒤, 단가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07-556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 후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위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한 아무런 내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화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수급사업자들을 기만하였다고 보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4-27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단가 대비 10%에 해당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인하를 할 인건비 하락 등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원·부자재 구매 강제(하도급법 제5조)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서비스를 구입 또는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거래조건은 양사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특정 원·부자재 구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①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②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개선에 특정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예시

-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다. 선급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1) 원칙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 용도, 지급 대상 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2) 법 위반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 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라. 하도급대금 감액(하도급법 제11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적정하게 산정된 수리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열악한 거래상지위에 따른 형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한 경우에도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고,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명시된 감액 사유를 기초로 감액하는 것도 부당한 감액에 해당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조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감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감액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법무 부서의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로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감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제재 사례

단가인하에 합의하면서 합의일 전에 위탁하였던 품목에 대하여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18-225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동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 인하 협의록 등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고, 실제로 합의일 이전에 납품되어 입고된 총 1,318개 품목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마.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2)

(1) 원칙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2) 법 위반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바.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1) 원칙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권(예: 지체상금, 하자보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상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파산 직전 상태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기한 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제재 사례

민원보상비,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미지급한 사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공사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 도중

	<p>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민원보상비 및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p>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시공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통지를 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 하도급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1) 원칙

(가)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는 제외),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증액(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지급하여야 함

① 설계변경, 목적물 납품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

② 위 사유로 목적물 완성,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

(나)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시 하도급대금 감액권

- 만약 설계변경, 목적물 납품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감액(변경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단, 증액과 달리 감액은 의무사항이 아님

(다) 공급원가 인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일부터 1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됨
 - ①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가 변동된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
- 조정을 위한 협의에 응하고, 협의과정 및 내용은 기록,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실하게 조정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아. 대물변제(하도급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3.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가. 발주 취소/반품/수령거부(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1) 원칙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① 이미 발주된 PO를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②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③ 목적물 수령 후 이를 반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지정, 협의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발주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 경우
③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 착수를 거부하여 납기에 완성, 완공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운송 과정에서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염되거나 훼손된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⑥ 양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검사기준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⑦ 원사업자의 승인 없는 영업양도 결의 등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 신청,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감독관청의 영업취소·정지처분 등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발주착오가 있었거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반품이 있어 발주한 만큼의 수량이 필요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있나요?

이는 원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을 취소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소비자 반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지만, 원사업자가 제품 수령 시 사전에 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목적물을 검사하고 합격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객 변심 등으로 반품된 경우라면 반품이 금지됩니다.

Q2.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위탁취소·반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시각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즉, 거래의존도)나 동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동의가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초래되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보전하거나(적어도 보전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협의가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제재 사례

발주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7-12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받은 제품에 정품이 아닌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위탁할 당시 발주서상에는 중국산 부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의 내용대로 납품하였다면 수급사업자 측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고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발주자의 가공과정에서 불량 발생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6-014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한 뒤, 이후 발주자가 해당 부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품을

	반품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반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자신의 생산계획,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08-11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생산 완료한 부품의 수령을 2~8개월 지연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수령거부·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하도급법 제8조 제2항, 제9조)

(1) 원칙

(가)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품질검사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목적물 검사 의무

- 위탁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다) 검사 결과 통지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검사 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 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 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2) 제재 사례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례 (공정위 의결 제2013-019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로부터 온도조절기 등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반품·하도급대금 감액 등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출·사용(하도급법 제12조의3)

(1) 원칙

(가) 기술자료 요구 금지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②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③ 사전협의 및 관련 서면을 발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가 허용됨

기술자료의 범위
<p>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p> <p>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p> <p>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p> <p>③ 위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p>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

- ① 기술이전계약이나 개발계약 체결 후 약정된 비용·개발비를 지급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②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제품 하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④ 위탁목적물의 사양을 확정하기 위하여 승인도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⑤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안전·환경이나 FTA 원산지 증명 등 법령상 규제사항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⑦ 해외 수출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목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법정 기재 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참고로 공정위는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음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법정기재사항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⑥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⑦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무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함. 일방 당사자의 서명·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자료요구서 법정기재사항
① 기술자료 요구목적
②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③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 방법
④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 방법
⑥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Q1.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술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상지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자료제공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하지는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자료 제공 경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를 기록해 두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메일 등 수집 가능한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기술자료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요구서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3) 제재 사례

엘에스엠트론(주)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사건 (공정위 의결 제2022-083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엘에스엠트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함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엘에스엠트론(주)은 금형 설

	<p>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또한,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라.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1) 원칙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p>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p> <p>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p> <p>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p>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 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납품조건에 관한 정보 등)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 제재 사례

단가인상의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추천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생산품목을 제한한 사례(공정위 의결 제2021-040호)	
행위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단가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① 원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 ② 특정 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할 것, ③ 자금집행계획 및 내역을 보고할 것 등을 요구함
공정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기타 유의사항

가.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행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②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행위
③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④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나.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III.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

-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2. 공공입찰 참가 제한

-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
-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

3.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로써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

4. 과징금

- 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5. 형사처벌

-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아래 벌금 대상 규정 위반 외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 3억 원 이하의 벌금
 - 보복 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6.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미만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② 부당위탁취소, 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③ 기술 자료의 유용·유출 ④ 보복 조치

IV. 업무상 유의사항(Do & Don'ts)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서 서명·기명날인 전 위탁물량, 목적물 사양 등이 정확하게 기재·확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수급사업자 업무 착수 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고, 양사 서명·기명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 기존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할 것•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것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양식 또는 과거 사용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거래조건이 발주서 또는 계약서 등에 남아있지 않도록 할 것• 당사자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것• 계약조건을 구두로만 변경하지 않을 것

2. 서면의 보존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목록을 숙지하고 누락·분실된 서류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중복되는 서류가 존재할 경우, 최종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Do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를 각 부서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을 것

3. 거래조건 협의 및 결정

[Do]

-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증빙을 구비할 것
- 비용·책임 분담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비용·책임 분담은 어느 일방에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할 것

[Don't]

-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을 것
- 양사 간 비용·책임 분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을 것
- 비용·책임 분담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사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것

4. 단가 협의 및 결정

[Do]

- 단가 협상·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것

- 최종 합의된 단가에 대해서는 그 산정 근거가 된 자료들을 보관할 것
- 단가 협의시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거래물량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견적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
- 수급사업자가 단가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
- 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개시하기 전에 확정할 것
- 단가인하 시, 원자재가격 하락 등 그러한 단가 인하가 합리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 근거에 관한 서류를 기록, 보관할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가 산정 근거를 구비할 것

[Don't]

-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단가인하를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것
- 객관적으로 예상 거래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예: "작년 물량에 준함", "추후 확정")로 제시하지 않을 것
- 구체적인 검토나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의 단가 관련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
- 단가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이미 과업을 상당 정도 진행하여 협상력이 낮아진 것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을 것
- 내부 원가절감목표 달성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시도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것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사전 서면고지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

5. 하도급대금 감액

[Do]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뒤 양사 협의를 거쳐 감액분을 확정할 것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할 것
-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양사 합의가 성립한 경우, 감액 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할 것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

[Don't]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것
- 하도급대금 감액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 않을 것

6. 하도급대금 지급

[Do]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할 것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수급사업자와 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더라도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준수할 것
- 수급사업자와 분쟁이 있어 수급사업자가 대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 해당 금액의 공탁을 고려할 것

[Don't]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와 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지연하지 않을 것

7. 발주 취소/반품/수령 거부

[Do]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할 것
- 단순 Forecast와 발주물량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할 것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려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확보할 것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취소·반품하려는 경우, 그 협의 과정을 철저히 기록할 것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반품할 경우, 그로 인

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

[Don't]

- 구두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
- 달리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취소·반품하지 않을 것
- 담보하기 어려운 물량의 발주를 약속하지 않을 것
- 계약이행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취소·반품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동의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지 않을 것
- 구체적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없이 반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

8. 납품, 품질검사 및 불합격통지

[Do]

-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
- 계약체결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할 것
- 목적물 수령 즉시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

[Don't]

- 업무량 과다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수령증 교부를 지연하지 않을 것
- 일방적으로 협의된 검사기준·방법과 다른 기준·방법으로 목적물을 검사하

지 않을 것

- 구두로 불합격통지를 하면서 반품,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

9. 경영간섭

[Do]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및 관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CP 부서 또는 법무 부서의 내부 검토를 거칠 것
-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그 목적범위 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검토할 것
-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경영정보는 요구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직후 폐기할 것

[Don't]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경영정보를 요구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수급사업자가 경영정보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공범위의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으로 정보제출을 강요하지 않을 것

PART 3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연혁

번호	일자	제·개정사항
1	2025.09.	자율준수 편람 제정(2025)

부록 1.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부록 2. CP 운영규정: 별첨